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민사소송법상 이의신청 포기 관련 규정 준용〉

■ 한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113호)

2025.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3
3. 관계기관 의견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준호의원 등 14인
2. 발 의 일 : 2024. 12. 30.
3. 회 부 일 : 2024.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화해권고결정” 역시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화해권고결정 모두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제도로 운용되고

있음.

그런데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그 신청 전까지 포기할 수 있어서 당사자가 이의신청권을 포기함으로써 신속한 사건 해결이 가능한 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권을 포기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사이 이의신청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의 빠른 해결이 곤란함.

이에 「민사소송법」 제229조 이의신청권의 포기 규정을 준용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도 이의신청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해결을 도모하고 재판상 화해 제도 등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민사소송법」 제229조¹⁾ 및 제231조제3호²⁾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해권고결정³⁾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포기과 이의신청권 포기 시

1) 「민사소송법」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① 이의신청권은 그 신청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재판상 화해 효력 규정을 「민사조정법」에서 준용하도록 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신청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⁴⁾을 부여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38조(「민사소송법」의 준용) ① 조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제58조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제1항, 제64조, 제145조, <u>제152조제2항·제3항</u> 및 <u>제163조</u> 를 준용한다.	제38조(「민사소송법」의 준용) ① ----- ----- ----- ----- ----- ----- <u>제152조제2항·제3항</u> , <u>제163조</u> , 제229조 및 제231조제3호-----.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민사조정이란 민사상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정담당판사 등의 조정을 통해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함으로써 해

3)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4)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결하는 제도를 말함. 「민사조정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조정 절차에 따라 자주적·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 법에 따르면, 민사상의 분쟁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경우 조정담당판사, 상임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 등이 조정을 진행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이 성립하도록 하고 있음.⁵⁾

또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조정담당판사 등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⁶⁾’이라 함.

5) 「민사조정법」 제7조(조정기관) ①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한다.

②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상임(常任)으로 이 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6조에 따라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으로서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사건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조정을 하는 상임 조정위원과 수소법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⑤ 제3항의 경우에 수소법원은 수명법관(受命法官)이나 수탁판사(受託判事)로 하여금 조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는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⑥ 조정담당판사가 제2항에 따라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장(調停長)은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분쟁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6) 「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

이 법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① 이의신청 없이 2주가 경과한 경우, ②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한 경우, ③ 적법하지 아니한 이의신청에 대해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음.⁷⁾

한편, 「민사소송법」의 ‘화해권고결정’은 소송 진행 중에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사자 간의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①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②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③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

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7) 「민사조정법」 제34조(이의신청)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審級)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訴)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2조(피신청인의 불출석)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

정이 확정된 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는 경우>

구분	「민사소송법」의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법」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4	<u>당사자가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u>	

즉,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화해권고결정과 다르게 이의신청권 포기 규정 및 이의신청권 포기 시 재판상 화해 효력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이의신청 의사가 없더라도 결정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의 기간을 기다려야 민사 분쟁을 완료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화해권고결정과 마찬가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2주일의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도 당사자가 이의신청권을 포기하면 해당 결정이 재판상

8) 「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화해의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과 같은 준용 방식의 규율은 준용 대상 규정의 변경에 따라 준용규정의 규율 내용도 달라져 법률 규정이 불명확해지고, 준용 대상 규정의 범위나 내용에 관한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음.⁹⁾

또한, 개정안에서 준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31조제3호는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 법 제34조제4항제2호에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어 개정안과 현행법의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따라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포기 및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에 관한 내용을 이 법 제34조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관계기관 의견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개정안의 내용은 「민사소송법」 상 화해권고 결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9)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220.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이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입장임.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민사조정절차에서도 이의신청권의 사전 포기를 통해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는 등 분쟁 해결의 신속성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61